

응 시 생 유 의 사 항

1. 검사 일시 : 2019. 8. 18(일) 09:00 ~ 12:00

2. 검사 장소

지 역	수 험 번 호	검 사 장 소
서 울 (강남)	6090001~6090660	서초고등학교
	6090661~6091320	잠신고등학교
	6091321~6091761	반포고등학교
서 울 (강북)	6190001~6190579	덕수고등학교
부 산	6290001~6290426	부산대학교 인문관
광 주	6590001~6590374	전남대학교 진리관

※ 검사 당일 검사장에 부착된 “**검사실 배치표**”를 확인하여 본인의 검사실에 입실, 해당좌석에 착석(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수험번호별 검사실은 미리 통지하지 않음).

–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3. 검사 시간표

교 시	영 역	입 실	문답지배부	검사 시간	비 고
제1교시	자연과학 I	08:30	08:55	09:00~10:15 (75분)	의학/치의학 (공통)
제2교시	자연과학 II	10:35	10:40	10:45~12:00 (75분)	

* 검사 개시 및 종료는 타종에 의함.

4. 검사실 입실 시간 엄수

- 응시생은 검사 당일 08:30까지 해당검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야 함.
- 검사 시작 후에는 검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.

5. 신분증 소지

- 출력한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거소번호증, 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 등)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확인 시 제시하여야 함.
- ※ 신분증 미 소지자는 퇴실 조치함(신분증보완서약서 작성자 제외).

6. 응시생 유의 사항 숙독

- 답안 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“응시생 유의 사항”을 숙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함(퇴실 시 문제지 지참 가능).

7. 2017학년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부터 변경된 사항 안내

-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음(문제지 지참하여 퇴실 가능).
- 개인필기구 지참가능. 단, 검사 시 책상에는 컴퓨터용수성사인펜,샤프펜슬,샤프심, 지우개,수정테이프만 소지 가능(그 외 필기구 휴대 불가).
- 협의회에서 지급하던 샤프펜슬,지우개는 지급하지 않음.
- 기존처럼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은 개별 지급되며, 수정테이프는 검사실별로 비치함.

8.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

<반입 금지물품>

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워치, 전자시계(결제·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), 무선호출기, 무전기, 블루투스 이어폰, 디지털 카메라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워크맨, 노트북 컴퓨터, 태블릿PC, 전자 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, 각종 정보화기기, 정보저장장치,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, 모든 전자기기.

※검사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검사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(미제출 시 부정행위 간주, 검사실 밖으로 반출)해야 하며 검사종료 후 되돌려 받음.

<휴대 가능물품>

신분증, 수험표, 컴퓨터용수성사인펜, 아날로그 시계(결제·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 시계 사용 불가: 스톱워치, 수험용 시계 포함), 개인필기구 등.

※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이용한 부정 행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휴대 가능 여부 결정(예 : 돋보기).

9. 검사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

◦ 검사 감독관의 검사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검사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
※ 결제·계산·통신기능 등이 있는 시계(스마트시계 등) 및 소리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이 불가함.

10. 답안은 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

◦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.

◦ 답안지 성명란에는 ‘정자’로 또박또박 성명을 기입하여야 함.

11.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

◦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한 수정 테이프 또는 응시생이 지참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답을 기표하여야 함.

◦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.

◦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.

12. 부정행위 엄금

◦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.

13. 부정행위의 정의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

◦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
－ 검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.

－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.

－ 검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반출하지 않은 행위.

- 검사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,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.
- 당해 검사 무효 및 이듬해에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 -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.
 -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.
 - 부정한 휴대물품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.
 -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.
- 민·형사상 조치 및 당해검사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검사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 - 사전에 조직적·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.
 -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(MDEET) 성적표를 의학/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/치과대학, 기타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에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.
 - 대리 검사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한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.

14. 검사 중 퇴실 불허

- 응시생은 검사 도중에 퇴실할 수 없음.

15. 기타 유의 사항

- 검사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검사장내에서는 일체 “금연”임.
- 검사 중 타 응시생에게 방해로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.
- 검사장소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람.
- 검사장 관리를 위해 개인 쓰레기는 퇴가자가 주십시오.

※ 응시생이 꼭 지켜야할 사항
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거소번호증, 재외국민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만 인정하므로 이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미리 **재발급**을 받아 검사 당일 지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-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/거소증/재외국민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본인확인 후 사본은 제출해야 함.